

교원 성과연봉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9. 8. 26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교원 성과연봉제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교원 성과연봉제에 대한 적용, 기준,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정년트랙교원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성과연봉제”란 교원의 교육, 연구, 봉사 등 기타의 성과를 일정주기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“연봉”은 연간 직위급, 직무급, 업적급 및 기타수당을 합한 보수를 말한다.

③ “직위”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

④ “직급”은 교수는 ‘P1, P2, P3’, 부교수는 ‘A1’, 조교수는 ‘G1’으로 구분한다.

⑤ “직위급”은 교원 해당 직위·직급에 따라 적용되는 보수를 말하며, 교직원 보수규정에서의 “봉급”을 말한다.

⑥ “직무급”은 교원 직위·직급별 업무 및 보직에 따라 적용되는 보수를 말하며, 기초직무급과 직책급으로 구분한다. “기초직무급”은 직위·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비와 월정액인 식대로 구분하며, “직책급”은 부여받은 보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최상위직에 해당하는 직책급만을 지급한다.

⑦ “업적급”은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.

⑧ “기타수당”은 직위·직무·업적급 외에 지급되는 기타의 보수를 말하며, 자녀보육비, 조정급으로 구분한다.

⑨ “조정급”은 연봉제와 호봉제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.

제4조(연봉의 비밀 유지)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은 자신 또는 다른 교원의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리고 해서는 안 된다.

제 2 장 연 봉

제5조(연봉계약) 연봉은 매년 사무처에서 개인별로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른다. 다만, 임용 사항 변동 등의 사유로 연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을 변경

체결할 수 있다.

제6조(연봉의 지급기간) 결정된 연봉의 지급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임용, 휴직, 복직, 면직,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(연봉의 결정) 연봉을 구성하는 직위급, 직무급, 업적급, 기타수당의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'교원 성과연봉제 운영지침'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장 연봉의 지급

제8조(연봉의 지급) ① 직위급, 직무급 및 기타수당은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7일에 지급한다. 다만,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② 업적급은 '교원 성과연봉제 평가규정' 및 '교원 성과연봉제 운영지침'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평가기간의 차년도 9월에 지급한다. 단, 정년퇴직교원의 경우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연봉의 계산) 직위급, 직무급 및 기타수당은 어떠한 경우의 임용 및 면직에 있어서나 발령 또는 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연봉의 감액) 직위급 및 직무급, 기타수당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15조에 따른다.

제 4 장 성과 평가

제11조(업적급 산정을 위한 평가) 당해 업적급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, 평가방법 등은 '교원 성과연봉제 평가규정'에 따른다.

제12조(평가결과 확정) 교무처는 평가기간 완료 후 기획처로 개인별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평가등급 확정 및 통보) 기획처는 교원 성과연봉제 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급 지급 등급을 확정하여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성과연봉제 업적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 및 등급별 인원배분 기준, 등급별 지급률은 [별표 2]과 같이 한다.

제14조(평가결과 재심) ① '교원 성과연봉제 평가규정'에 따른 업적 등급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업적급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[첨부 1]의 양식을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업적급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업적급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업적급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업적급 재심위원회) ① 교원 성과연봉제의 업적급 재심을 위하여 업적급 재심위원

회를 둔다.

- ② 업적급 재심위원회는 재심 청구 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④ 업적급 재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5 장 기 타

제16조(직위 및 직급의 확정) 교원의 직위 및 직급 확정은 교원인사규정,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, 교원업적평가규정,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17조 (기타) ① 교원의 복지를 위하여 교직원보수규정 <별표 7>의 9호, 18호, 23호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9.8.26>

② 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 정관, 교직원 보수규정, 강의료 지급규정 등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9.8.26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제3조제9항의 조정급은 2017년 2월말 현재 재직교원에 한하여 지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 표 1>

교원 성과연봉제 평가등급별 업적급 지급률

등급	S	A	B	C	D
지급률	150%	125%	100%	75%	50 or 0%
인원비율	5%	20%	50%	20%	5% 이내

※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±5% 내외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※ 업적급 : (개인별 직위급+기초직무급) X (성과평가 등급별 지급률) X
(해당연도 업적급 지급률)^{주)}

주) 업적급지급률 :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함

